고령·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 사유

○ 성주군·고령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○ 구　　성

-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(성주 10명, 고령 10명)
- 회장은 자치단체장(순번제로 역임), 회원에 기획감사실장, 해당 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- 임기는 회장은 2년으로 1회 연임가능, 회원 2년으로 연임가능.(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)

○ 처리사무

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-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번영에 관한 사항
-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
-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

○ 회　의

- 정 족 수 :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회　의

- 정기회 : 연2회(상・하반기 1회씩)
- 임시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요구시

*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가능

○ 실무협의회

- 회　원 : 기획감사실장 및 의안 관련 부서장
- 회　장 : 행정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
- 역　할 :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・보고

4. 기타 참고사항

○ 근거 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15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고령·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은 우리 군과 고령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규약으로서

○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규정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및 협의회규약(안)과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며

○ 따라서 본 규약 제정으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, 시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“고령·성주 농어촌 생활권행정협의회”를 구성, 운영함으로서 공동사업의 발굴, 발전계획 수립, 재원 분담과 투입, 행정협력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,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